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
번 호	

1. 수정이유

○ 제14조 2항의 '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'를 산정함에 있어 총 주차대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 14조 2항의 신설되는 각 호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O 제14조 제2항에 주차대수 명확한 산정기준 삽입
 - 당 초 :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변 경: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- 제14조 2항의 신설되는 각 1, 2, 3호의 중복조문 삭제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 중 "다음 각 호와 같다"를 "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1. 주차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: 설치불가
- 2.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: 주차대수의 70퍼센트 이하
- 3.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: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부설주차장 설치	제14조(부설주차장 설치 기준) ① (현행과 같	제14조(부설주차장 설치 기준) ① (현행과 같
기준) ① (생 략) ② 시행규칙 제16조의2	음)	음)
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	②	②
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은 부설		
		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
<u>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</u> <u>다.</u>	호와 같다.	같이 정한다.
<u><신 설></u>	1.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: 설치불가	1. 주차대수가 30대 이하 인 경우: 설치불가
<u><신 설></u>	2.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31대 이상 300 대 이하인 경우: 부설주 차장 총주차대수의 70퍼센 트이하	2.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:주차대수의 70퍼센트이하
<u><신 설></u>	3.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300대를 초 과하는 경우: 부설주 차장 총 주차대수의 30퍼 센트 이하	3.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:주차대수의 30퍼센트이하
③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자 주식주차장으로 설차하여야 한다.	<삭 제>	<삭 제>

조례 제 호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 중 "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"를 "제 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1. 주차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: 설치불가
- 2.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: 주차대수의 70퍼센트 이하
- 3.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: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